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3306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330677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2414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변론종결 2022. 8. 10.

판결선고 2022. 9. 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241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F 사이에” 다음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0. 체결된,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7. 체결된,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7. 체결된,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0. 체결된 각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8. 29. 접수 제244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 6. 접수 제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 6. 접수 제3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F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8. 29. 접수 제24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F 사이에” 다음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김지영, 판사 윤남현

별지